
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 
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 
검 토 보 고

1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1016호
- 나. 발 의 자 : 박성연 의원(외 11명)
- 다. 발의일자 : 2023년 8월 4일
- 라. 회부일자 : 2023년 8월 21일

2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시행에 따라 서울특별시 조례에서 기존의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일괄정비하여 법적 체계정합성을 확보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접근성을 개선하고, 이를 통하여 시민의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서울특별시 조례에서 종전의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일괄정비함(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).

## 4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이준석)

### 가. 조례안의 개요

- 지난 2023년 6월 9일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‘지방분권법’)과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(이하 ‘국가균형발전법’)이 통합되어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이 새롭게 제정됨에 따라 종전의 법률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일괄 정비하고자 발의됨.

### 나. 조례안의 일괄개정 사항

- 우리나라의 2022년 합계출산율은 0.78명으로 OECD 최하위 수준이자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였고, 지방에서 유출되는 인구의 대부분은 수도권으로 유입되어 2022년 전체 인구의 50.5%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.<sup>1)</sup>
- 이러한 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지방소멸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한편 지방분권정책과 균형발전정책은 유기적인 연계 없이 개별 추진됨에 따라 정책의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.
- 이에 정부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관련 계획을 연계하고 통합적인 추진체계를 구축·운영하기 위해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법을

---

1) 통계청 ‘2022 한국의 사회지표’

통합한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을 제정한 것임  
(2023. 6. 9. 제정, 2023. 7. 10. 시행).

- 그리고 신법에 근거하여 두 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 위원회를 설치하고,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,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 지방시대 관련 정책을 지원할 법적 체계를 마련하였음.
- 이에 동 조례안은 「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」 등 3개 조례에서 인용되고 있는 구법의 명칭을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으로 일괄개정함으로써 법률명의 상이에서 초래되는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담당 조사관	연락처
김소연	02-2180-8065